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29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청장
변 론 종 결	2021. 1. 21.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37,621,100원, 지방교육세 37,156,7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호철물 공사업, 금속제품 가공업, 강화유리제조 및 유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7. 12. 30. 설립된 법인으로, 2015. 5. 28. [redacted]공사로부터 [redacted]구 B공장용지 11,62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9,293,566,000원에 매수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 28.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를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66,053,52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437,621,100원, 지방교육세 37,156,7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redacted]광역시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지원 계획 공고'에 따라 정부의 그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너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친환경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장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착공과정에서 설비의 효율성이 목표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견되어 부득이 재설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취득한 특허를 활용하여 국제공인규격에 맞는 신제품을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생산라인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도면대로라면 설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처분 후에도 공장신축에 매진하여 예정 준공일보다 훨씬 앞선 2020. 5. 14. 사용승인을 받은 점, C공단 분양홍보물에 취득세는 면제기간을 표시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D공사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특례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지방세특례법 상 '정당한 사유'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연면적 8,534.63㎡)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 23. 이를 허가하였다.

(2) 원고는 2018. 1. 12. 피고에게 착공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착공예정일자가 '2018. 10. 1.'로, 연기사유는 '업계 경기침체로 인한 착공연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2018. 10. 1.까지 착공연기 처리하고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착공연기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됨을 통보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8. 9. 13.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취소사유가 '건축주 사정으로 취소함'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취소처리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5) 피고는 2019. 8. 5.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그 현황 등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출장복명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별다른 공사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7) 한편 원고는 2019년 11월경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연면적 10,027.22㎡)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12. 2. 이를 허가하였으며, 2019. 12. 17. 원고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8) 이후 원고는 공장을 완공하여 2020. 5. 14.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특례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2919 판결 등 참조),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 ·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02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방세특례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산업단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 · 입주하여 공장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공장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752 판결 등), 공장의 건축규모를 고려하더라도 3년의 기간은 직접 사용의 준비기간으로서 결코 짧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바, 원고는 감면 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아무런 법령상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당시 약 4년간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redacted]광역시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지원 계획'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redacted]광역시장이 수립한 것으로, 설비용량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redacted]광역시 소재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사업자 중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 및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일 뿐, 건축의 설계, 건축 등을 제한하는 시책이 아니다.

③ 또한 국제공인규격에 맞는 신제품을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생산라인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설계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라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감면 유예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8. 1. 12. 착공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연기사유를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과 달리 '업계 경기침체로 인한 착공연기'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외부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토지 상 공장 건축에 소요된 기간을 감안할 때 원고가 2015. 5.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감면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D공사도 계약 당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을 신청한 후 유예기간 동안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